특허보세구역 설치·운영 특허(갱신) 신청시 제출 자료

- 1. 특허보세구역 설치·운영 특허(갱신) 신청서 * 창고 수용능력 계산자료 첨부할 것
- 2. (특허 갱신시) 기존 특허장 사본
- 3. 보세구역의 도면 및 부근 위치도
- 4. 보세구역의 도면에서 특허 희망 장소 표시 (3번 자료와 별개로 제출)
- 5.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
 - * 건물 바닥 재료(시멘트, 콘크리트 아스팔트) 확인 자료
 - * 판넬 등 사용시 난연 등급 증명 자료
 - * 임차인 경우. 임대차(전대차)계약서(사본)도 첨부
- 6. 부동산 등기부등본(토지 및 건물)
- 7. 사업자등록증
- 8. 법인등기부등본(*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)
- 9. 등기임원(대표·이사·감사) 명부(직책,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) 제출
- 10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- 11. (해당 창고만 제출) 위험물 허가서(승인서) (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제2호)
- 12. (해당 창고만 제출) 위험물 취급 자격증 및 재직증명서
- 13. (해당 창고만 제출) 식품류 (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4 증빙자료)
- 14. 국세납세증명서(세무서)
- 15. 표준재무제표증명원
- 16. 보세사 자격증, 등록증(보세화물경력 증빙 포함) 및 재직증명서
- 17. 경비위탁계약서 및 무인경비업체(예시 : 세콤 계약서)
 - * (신규 신청시) 견적서, 기기내역서, 기기리스트
- 18. 감시장비(CCTV) 현황,(화소, 녹화일수 기재), CCTV 배치도면
- 19. 출입자·출입차량 통제시설과 운영현황 자료
- 건물에서 일정 구역(ex. 5층 건물에서 3층만 특허 / 1층 건물 내에서 특정 구역만을 특허 신청)을 특허신청시 특허신청 구역 통제 증빙 필요
- 20. 보세화물반출입 전산시스템(이씨스, 유한테크노스 등) 사용 계약서
- 21. 내부자율통제시스템 (아래 내역 포함 필수)
- 내부 화물관리 종합책임자 및 책임체계
- 화물 반출입 및 보관 절차
- 대장 기록 체계
- 출입자 통제 및 시설안전관리
- 세관 보고 사항 및 절차
- 보세화물 취급 직원 교육 방법

-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과 청렴위반자에 대한 징계 체계
- 22. 장비 보유현황(지게차 등, 건설기계등록증·매매계약서·임대차계약서 등)
- 23.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보고서
-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22조에 따른 소방시설 등 점검결과보고서 (최근 1년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) 또는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제14조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(신설 건축물에 한함)
- 24. 전기관련 전기안전공사 발급 -
 - 「전기안전관리법」제11조에 따른 정기검사확인증(「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제8조에 어서 정한 정기검사 시기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정) 또는 「전기사업법」제63조에 따른 사용전검사필증
- 25. (해당 경우)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관세청(세관)관련 관세행정 유공 표창 사본
- 26. (해당 경우) 차량번호 인식 등 출입차량 자동통제 시스템 설치 증빙자료
- 27. 사업계획서(연혁, 사업내용, 거래처, 취급물품 등 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)
- 28. 시설물 사진 메일(cmh6267@korea.kr)로 제출 → 관련양식 별도 안내
- 29. CCTV 영상 조회권한(관련 사이트주소, ID, Password) 세관에 제공할 것
- 30. 특허 신청(갱신) 신청 수수료 납부시, 납부내역서 제출(cmh6267@korea.kr)
- ▶ 제출방법: 3구 링바인더로 제출 (제출목록별로 색인지로 구분, 비닐X)
- ▶ 특허 갱신시 기존 자료 그대로 제출 x (갱신 시점 현행화 체크)
- ▶ 가이드라인 읽어보시고 자료 제출 바랍니다.

별표 : 특허신청서 기재 요령(반드시 준수 할 것)

(별지 제1호서식)

| | 특히 | 허보세구역 설 | 갱신) 신청 | 서 처리기간 30일 | | | |
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|--|
| 신 | 1 | 법 인 명(상호) | | ② <u>법인등록번호</u> (사업자등록번호) | | | |
| 건 청 인 | ③ 주 소 | | | | | | |
| 인 | 4 | 대 표 자 성 명 | | ⑤ 주민등록번호 | | | |
| | 일 | ⑥ 보 세 구 역 명 | (한글) | ⑦ 종 류 | | | |
| | 반 사 | | (영문) | 8 창고유형 | (별표 3 참조) | | |
| | 항 | 9 소 재 지 | | | | | |
| | 설 성 사 항 | ⑩ 면 적 | | | | | |
| 신 | | ① 건물등의 시설 구조, 동수, 면적 | | | | | |
| 청 | | ① 부대시설 구조, 동수, 면적 | | | | | |
| 내 | | ③ 작업설비, 수용능력 | | | | | |
| 용 | 안 영 사 항 | ④ 설치 · 운영기간 | | | | | |
| | | ⑤ 장치물품의 종류 | (별표 3 참조) | | | | |
| | | ⑥ 반입 형태 | (별표 3 참조) | | | | |
| | | ⑪ 설치·운영 목적 | | | | | |
| | 기 타 | ⑧ 자율관리 갱신 | □ 자율관리 보세구역 지 | 정기간 갱신 신청 (| (해당되면 🗹 표시) | | |
| 「관세법」제174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88조 및「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」 | | | | | | | |
|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특허보세구역을 설치 · 운영하고자 신청합니다. | | | | | | | |
| | | | ار ا | | 일 | | |
| |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 | | | | | | |
| 세 관 장 귀하 | | | | | | | |
| 천년 | 부서 : | 류 : 후면 | | | 수수료 | | |
| П | 1 1 | W · C | | | 45,000원 | | |
| 른 |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 및 제38조, 제42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후면의 '담당 공무원 확인사항'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| | | | | | |
| | | | 신청인 | () | 서명 또는 인) | | |

[별표 3] 특허보세구역 설치・운영 특허(갱신) 신청서 기재 요령

| 기재 항목 | 기재 방법 | 비고 |
|--|---|----|
| | ■ 무역통계부호 상의 '보세구역' 유형 기재 | |
| ⑦ 종 류 | 1.영업용보세창고, 2. <u>자가용보세창고</u> , 3 컨테이너전용, 4.CFS, 5. 공동보세구역 등 | |
| ⑧ 창고유형 | ● 아래 창고유형 중 선택 (복수 기재 가능) ■ '10.기타'의 경우 괄호 <u>안에</u> 실제 반입물품 기재 1.일반, 2.위험물품, 3.야적전용, 4.컨테이너전용, 5.액체・기체, 6.냉동・냉장, 7.수조, 8.silo, 9.혼합, 10.기타() | |
| ① 면 적 | ■ 총 특허면적과 창고유형별 면적을 구분하여 기재 ■ 창고유형별 면적은 위 기재항목 ⑧항 참조 (예시) 총 특허면적 @@@.@@m² (일반 @@m², 야적장 @@m²) | |
| ① 건물등의 시설 구조, 동수, 면적 | ■ 등기부등본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| |
| ③ 작업설비, 수용 능력 | ■ (작업설비) 장치화물 취급 시설 및 장비 기재 ■ (수용능력) 장치물품 종류에 따라 수용능력 기재(M/T, TEU 등) | |
| ④ 설치 · 운영기간 | ■ 10년의 범위 내 희망 특허기간 기재 | |
| ⑤ 장치물품의 종류 | ● 아래 물품종류 중 선택 (복수 기재 가능) ● '①기타'의 경우 괄호 안에 실제 반입물품 기재 1.농・축산물, 2.수산물, 3.식품・의약품, 4.주류・담배(선박용품 제외), 5.선(기)용품, 6.광물・광석・유리・금속, 7.화장품, 8.석유화학, 9.피혁, 10.펄프・원목・紙류, 11.섬유・의류・신발, 12. 철재, 금속, 공구류, 13.기계・기구, 14.전기・전자・광학, 15.차량・항공기・선박 등, 16.군수・방산물품, 17.기타() | |
| ①6 반입 형태 | ● 아래 물품종류 중 선택 ● '⑤기타'의 경우 괄호 <u>안에</u> 실제 반입물품 기재 1.일반(포장), 2.산물, 3.액체(기체), 4.활어, 5.기타() | |
| ① 설치·운영 목적 | ■ 설치운영 목적에 맞게 기재 (작성 예시) - 자가사용물품 장치 및 통관 - BWT 물품 장치, - 판매용물품 보관 및 통관 - 연구용 원자재, 조선해양기자재, 항공기 부분품 장치 및 통관 - 군수품, 방산용품, 조달물품, 검역물품, 정부비축물품 등 장치 및 통관 - 선(기)용품, 선(기)내판매용품, 특송물품 장치 및 통관 | |
| ⑧ 자율관리 갱신 | ■ 자율관리 보세구역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 표시 - 자율관리 보세구역 갱신과 특허보세구역 특허 갱신을 통합 신청하는 경우 □란에 ☑표시(※ 심사기간은 특허 갱신 심사기간 30일) | |